

RP(대고객판매조건부) 상품설명서 (요약)

투자 위험등급 : 6등급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녹취·속려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	일반투자자
N	N	N	N	N	N

※ 고령투자자: 65세 이상 / 부적합투자자: 고객투자성향등급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정기예금	RP	MMF
판매기관	은행	증권사	은행, 증권사
상품유형	약정금리형	약정금리형	실적배당형 (원금손실 가능)
상품만기	약정형	수시형, 약정형	개방형
수수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있음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자보호	예금자비보호	예금자비보호

□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발생가능한 불이익	■ 신한투자증권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적격등급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 : 신한투자증권에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담보채권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담보채권의 처분시 시장가액에 따라 일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과 담보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유동성 위험	-	O	-
	수시RP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매매시간(영업일 08:20~16:30) 중 언제든지 매매 가능하지만 기간RP의 경우 약정기간 전 환매 시 약정수익률보다 저율의 수익률이 적용(환매수수료와 유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수시형RP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경과 시 (비영업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 계좌 유형 및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수시형RP로 자동재투자 되며 재투자 수익률은 재투자 시점에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 됩니다. -기간형RP는 만기일 이전 언제라도 환매 가능하지만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이 적용되며 고객이 선택한 약정일자(만기) 경과시 계좌유형 및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수시형RP로 자동재투자 되며 재투자 수익률은 재투자시점에 회사가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 됩니다. -CMA-RP는 당사에 개설한 계좌 중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만든 CMA계좌의 예탁금 잔액에 대해 CMA계좌전용 RP를 자동매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MA서비스약관 참조) <u>※ CMA-RP는 별도의 CMA서비스를 약정하고 투자상품으로 RP를 지정하여야 합니다.</u>
------	---

예금자보호 여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
----------	--

□ 당사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구분	고객투자성향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투자형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함.
2등급 (높은위험)	적극투자형	시장 평균수익률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수용
3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4등급 (보통위험)	위험중립형	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일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민원상담,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상담센터 (1588-0365) 및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부서 : 신한투자증권 RP운용부 (대표번호 : 1588-0365)

RP(대고객환매조건부) 상품설명서 (상세)

□ 원화RP 상품 개요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정 의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 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당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고객에게 다시 매수하여 사전에 약정된 확정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기금융 상품입니다.
환매조건부 매매대상 증권	- RP 매매에 사용되는 채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등급입니다. (CMA용 RP : A- 이상)
계약 유형	- 수시형RP 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점에 회사가 사전에 고시한 수익률로 재투자 되며 투자경과일수와 비례한 만큼 수익이 지급됩니다. - 기간형RP 는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합니다. 고객이 선택한 약정일자(만기)까지 보유하여야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만기 이전 언제든지 환매 가능하지만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의 고지	- 상품 금리 및 약정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채권/RP > RP/외화RP 안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증권의 보관	- RP거래 성립시 고객에게 매도하는 담보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정해둔 적정 담보비율에 따라 매 영업일마다 채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원금 + 경과이자)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됩니다.
매도 증권의 교체	- RP거래시 고객에게 매도하는 담보채권은 만기나 운용상의 이유로 회사가 보유한 다른 투자적격등급 채권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유형별 특징

계약 유형	상품명	주요 내용
수시형RP	일반RP (수시)	-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매매시간(영업일 08:20~16:30) 중 언제든지 매매 가능 - 28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28일 이후 시점의 일반RP (수시) 수익률로 자동재투자
	처음ISA 서비스 전용 수시RP	- 가입자격 : 중개형ISA 고객 중, '처음ISA' 서비스 가입한 고객 - 자동매수 된 처음ISA 서비스 전용 수시RP는 언제든지 매도 가능 - 28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28일 이후 시점의 처음ISA 서비스 전용 수시RP 수익률로 자동재투자
기간형RP	일반RP (28일)	- 약정기간 전 환매 시 약정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적용 (중도환매시 중도환매이율 적용)
	일반RP (91일)	- 기간RP 만기일에 기간RP로 재투자 하지 않을 경우, 만기시점의 계좌유형 및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수시형 RP로 자동재투자 (특정계좌의 경우 자동재투자 불가하오니 지점 또는 고객센터원센터로 사전문의)

※ 투자소득 과세는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과세됩니다.

※ 상품 투자 중 약정수익률 변동시에는 기존 매수 당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상품 매도 후 재매수시 변동된 약정수익률로 매수가능)

□ CMA-RP 서비스 개요

- CMA계좌는 고객이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 CMA-RP서비스는 해당 계좌의 예탁금잔액으로 「CMA서비스 계좌전용 RP」를 자동매수합니다.
(단, 자동매수 처리는 10,000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10,000원 미만인 경우는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CMA-RP는 별도의 CMA서비스를 약정하고 투자상품으로 RP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CMA서비스 계좌전용 RP」상품은 원화RP와 상품의 개요 및 특징이 동일합니다.
- 상품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자산관리물 > CMA > 신한명품CMA소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을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CMA 상품별 주요내용

구분	가입대상	주요 내용	수익률형태
CMA-RP	개인, 단체, 일반법인 가능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 불가)	- 한도 : 개인 한도 없음 법인 5억 (1일 매수한도), 총 한도 30억 ※ 토요일,공휴일 : 개인 및 법인 3억 (1일 매수한도)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CMA로 관리하지 않음 (위탁 예수금으로 관리함)	약정금리형
CMA-MMF	개인만 가능	- MMF 운용 실적에 수익률 연동.	실적배당형
CMA-MMW	개인, 단체, 법인 가능 (단, 은행,증권사, 펀드자금, 신탁자금은 예수 불가)	-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며, 원금과 수익금을 매 영업일 재투자.	실적배당형

※ 투자소득 과세는 출금 또는 재투자 시점에 과세됩니다.

※ CMA-RP형 상품 투자 중 약정수익률 변동시에는 기존 매수 당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상품 매도 후 재매수시 변동된 약정수익률로 매수가능)

"설명서 상에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 QR코드를 찍으세요.

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어사전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용어사전'
금융감독원 FINE web page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진행절차 :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 ② 회사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주의사항 :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 ① 금융소비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
 - ②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③ 회사는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단,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성 상품**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
 - 대상상품 : 모집형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신탁(금전신탁제외), 고난도 금전신탁
 - 효력발생 :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등")를 발송한 때
-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받은 금전, 재화등을 반환(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회사가 부담)